

行政高試制度의 改善方案

鄭 正 信*

I. 序 言

行政高試制度는 行政府의 指導者나 高位行政管理者들을 공급·育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指導者들을 양성하는 역할도 해 왔으며,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國家發展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영향을 감안하면, 高試科目 등 試驗制度의 내용이 國家·社會적으로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高試制度는 大學教育이나 學問의 내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行政高試制度의 改編方向을 검토하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基本方向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高試科目과 職列·職類의 細分化 필요성의 검토이며, 모집人員, 學歷·年齡制限 등의 자격요건문제에 관한 것들로서 이들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II. 募集人員 및 資格要件

1. 募集人員

(1) 行政高試 合格者의 변화

1950年代까지는 實績主義가 확립되지 않아서 高試合格者의 數字는 극히 적었다. <表 1>에서 보듯이 행정·외무·기술고시의 어느 것이든, 高試合格者의 總數가 年平均 22.2명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資格考試이면서, 司法高試와 科目도 비슷하여 兩科 合格者도 흔히 있어서 과연 얼마만한 數字의 合格者가 行政職에 채용되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표 1> 행정고시 합격자

연 도	총 계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연 평 균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1949~1959	244				22.2			
1960~1970	575	461	61	53	52.27	41.9	15.25	13.25
1971~1975	937	804	103	130	207.4	160.8	20.6	26.0
1976~1980	1,512	944	212	356	302.4	188.8	42.4	71.2
1981~1985	859	537	128	194	171.8	107.4	25.6	38.8
1986~1988	548	398	60	90	182.67	132.7	20.0	30.0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1960年代에 와서 실적주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고 1970年代에 絶頂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1970年代 後半에는 年平均 302.4명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1980年代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1980年代의 行政高試 합격자의 감소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士官학교 出身 장교의 채용인데 이것은 行政高試 合格者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 왔다. 1988년을 계기로 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부는 行政高試 合格者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外務高試나 技術高試의 合格者數는 대폭 감소되었는데, 行政高試의 경우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 경우의 主된 원인은 1980年代에 와서 심각하게 된 행정부의 人事 정체이다. 1970年代에는 기구가 계속확장되어 職位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공무원이 長·次官 등으로 발탁이 많이 되어 事務官, 書記官 등의 上位職位로의 승진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80年代初에 와서, 정부는 기구축소를 시도하였고 1980年代 中盤에 접어들면서 公職사회의 安定과 더불어 上位職으로의 승진이 극히 제한되어 事務官 職位에의 새로운 充員이 감소되었던 것이다.

(2) 人員增加의 필요성

行政高試合格者의 數字는 두가지 要因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 전체 事務官(5級) 新規任用者의 숫자 둘째, 高試出身 채용과 内部 승진의 비율이다.

첫째, 전체 事務官 新規任用者의 숫자는 앞으로 두가지 要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다. ① 行政需要의 변화이다. 이것은 民主化의 추진과 더불어 政府의 民間部門에 대한 介入(認·許可 등의 規制나 經濟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 때문에 그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논의되는 한편, 福祉化·國際化 등에 대비한 行政需要의 增加뿐만 아니라 民主化時代에 요구되는 對國民, 對政治圈에 대한 대응적 活動의 급격한 증가로 行政需要의 커다란 增加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 國家機能(따라서 行政機能)에 대한 需要는 오히려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현재와 같은 人事정체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이다. 현재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되는데 10여년 이상이 걸리고 심지어는 15, 1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처나 行政改革委員會 등에서 職級調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하튼 古參事務官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昇進이나 昇級되지 못하는 사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事務官(5級) 任用의 數字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内部승진과 公開採用의 比率과 이의 조정에 따른 公開채용자의 증가 가능성이다. 원래 5급(사무관)의 총원에는 内部승진과 公採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總務處의 人事當局에서는 이를 6:4의 비율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76~1988까지의 5級公務員 전체의 充員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公採의 비율이 30% 水準에 머물고

〈表 2〉 5급 공무원(사무관) 채용실적(1976~1988)

總 充 員 數	9,303	(1986~1988 : 1,614)
公 開 採 用	2,884(31.0%)	(1986~1988 : 494=30.6%)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크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원래의 비율을 유지 못함은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內部승진과 公採의 비율이 부처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의 경우는 公採出身이 너무나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8. 7月末 현재, A부처에는 5급 총원 216명(본부 전체) 중에서 公採出身이 138명으로 약 64%, B부처에도 총원 252명 중에서 公採出身이 157명으로 62.3%에 달하는데 비해서 비슷한 경제부처인 C부처에서는 총 152명 중에서 公採出身이 46명으로 30%, D부처에서는 총 135명 중에서 公採出身이 28명으로 20.7%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심한 격차는 부처의 성격이나 人氣度의 차이 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公採出身이 지나치게 적은 부처는 새로운 vision이나 관리지식을 갖춘 者들의 영입에 문제가 있음은 틀림없다. 이런 부처에서는 公採出身을 증가시킬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公採出身이 많은 부처의 경우에는 職級體系의 단명한 검토와 내부승진의 비율증가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公採出身 비율을 제대로 40% 수준으로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資格要件

學歷制限과 年齡制限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有能하고 원만한 公職者의 확보와 下流 계층의 國民에게 平等하게 公職기회를 부여하여 公職社會의 國民代表性을 向上시키려는 노력이 상호 모순·충돌되는 부분이다.

(1) 年齡制限

현재는 만 20歲 이상~35歲 이하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30歲 이상인 응시자의 합격은 7~8%에 머물고 있다. 행정고시의 경우에는 169명이 합격하여 전체의 7.5%, 그리고 기술고시의 경우에는 39명이 합격하여 전체의 5.8%로 더욱 비율이 작다.

私企業體에서 30歲 미만의 者들만을 채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표 3〉 行政高試 合格者와 高齡者(1973~1987)

	총 합 적 자	30 歲 以 上
行 政 高 試	2,257	169(7.5%)
技 術 高 試	675	39(5.8%)

가능성이 있으나 公職에 대하여 民間부문이 보다 매력적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수한 者의 5級 公採용시가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이다(30歲 이전에 빨리 私企業體에 취직하려고 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30歲 이상의 자들의 行政高試, 技術高試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커다란 장점이 있다. 첫째, 正常的인 大學生活이나 수험준비 時期에 與件이 나빠서 시험 준비를 못한 不遇한 계층에게 폭넓은 機會를 제공하여 公職社會의 國民代表性을 향상시킨다. 둘째, 國民의 의무인 軍隊入隊를 위해서 수험준비를 못한 응시자에게 不利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短點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첫째, 많은 高級人力인 大學卒業者가 계속해서 응시하여 國家的으로 時間과 노력을 낭비시키고 둘째, 大學在學時부터 계속 수험준비만 하는 우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民間부문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또 公職社會보다 私企業體가 보다 매력적이 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최근의 人事 政체가 가져오는 문제점인데, 현재와 같이 昇進이 정체된 상태가 계속되면 高齡의 高試合格者는 커다란 좌절감과 패배심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現在の 직급체제를 보면 고시합격후에 正常的으로 昇進될 수 있는 段階는 書記官, 副理事官, 理事官의 3段階이며 能力이 있고 운이 좋은 境遇에는 1급까지 昇進한다고 하더라도 4段階이며 職位를 보면 課長, 局長, 次官補로서 3段階에 不過하다. 30년간을 봉사하게 되면 한단계 昇進에 10년이 所要되지만 現在の 추세를 보면 課長에 昇進하는데 13~4년이 걸릴 可能性이 크다. 그러므로 30세에 合格하여도 40세가 넘어서 課長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30세 以後에 合格한 사람들은 公職生活에 대한 보람을 잃어버릴 可能性이 크다.

그러므로 20세~35세 以下로 되어 있는 年齡制限을 20歲~30歲 이하로 낮추는 方案을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현재 受験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不利益을 주지않도록 長期的(예를 들면 10年 정도)인 계획을 세워 이를 사전에 발표하고 서서히 연령을 인하시켜야 한다.

(2) 學歷制限

과거 15年 동안의 실적을 보면 大學中退 및 그 以下の 學歷을 가진 行政高試 합격자는

<표 4> 高試合格者の 學歷(大學中退 및 그 이하의 者)

		총 합 격 자	대학中退 및 그 以下
행정고시	1973~1987	2,257(100.0)	56(2.5)
	1980~1987	972(100.0)	6(0.6)
기술고시	1973~1987	675(100.0)	18(2.7)
	1980~1987	324(100.0)	4(1.2)

56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1980~1987까지의 기간을 단 6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기술고시의 경우도 <表 4>에서 보듯이 1973~1987기간에는 총 18명으로 전체의 2.7%, 1980~1987기간에는 총 4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이렇게 大學中退 以下の 합격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學歷制限을 強化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大學 2年修了 以上の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의 長點이 있다. 첫째, 正常的인 大學生活을 한 원만한 公職者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大學 1,2年生들이 지나치게 일찍 高試공부를 시작하여 大學教育 왜곡이 일어날 可能性을 완화하고, 셋째, 大學 3年 履修를 條件으로 하는 경우에 基礎的인 과목들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거나(예를 들면, 技術高試의 경우에도 英語, 國史, 國民倫理 등의 교양과목의 比重이 44%나 된다), 職列에 따라서는 專攻學科를 지정하여 이 學科 卒業生이나 在學生만 응시하도록 하여 專門性을 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學歷을 제한하게 되면 下流階層으로부터 指導的인 公職生活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 不平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었던 豫備試驗制度를 부활시켜야 한다. 즉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예비시험은 大學 1,2학년에서 履修하는 科目들을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教養科目중의 一部를 本考査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

Ⅲ. 職類 및 職列의 調整

1. 職位分類制와 人事行政의 展望

원래 職位分類制는 專門家를 確保, 養成하여 行政의 專門化를 圖謀하고자 하는 制度로서, 一般行政家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階級制와는 그 目的이 相異하다.

職位分類制는 同一한 分野의 職位에 專門知識을 갖춘 者를 繼續 배치하여 專門性을 向上시키는 長點을 가진 制度이나, 反面에 동일한 分野 내에서만 補職, 昇進됨으로서 上位職位로의 昇進可能性이 制約을 받는 등 人事上의 정체와 部省割據主義가 발생하는 등의 短點이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밀한 職位의 分類는 오히려 이러한 短點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技術高試의 경우에는 昇進할 수 있는 上位職位가 相對的으로 적게되어 심각한 人事停滯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나치게 세밀한 職位分類는 이들의 士氣에 著해요인으로 작용하고 重要한 巨視的 政策決定問題에서 科學技術側面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또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 지나친 職位의 細分化로 인해 部省割據主義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現代의 産業社會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社會問題는 여러 분야가 複合的으로 얽혀서 발생하므로 자기 部處의 業務에만 視覺을 限定시켜서는 바람직한 解決代案을 구상할 수가 없다. 보다 폭넓은 視覺과 全體를 내다 볼 수 있는 眼目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階級制的인 性格이 強했으며 1960년대 以後 漸次 行政高試 등의 國家高試에서 職位分類制의 精神을 強化하고 있다.

2. 現 況

1950년대까지 日本制度를 본따서 一般行政, 財經, 外務, 教育 등의 4개 分野로 나누어서 行政高試를 實施했으나 合格者의 수자가 너무나 적어서 意味가 거의 없었다.

1963년도에 와서 技術高試를 實施했으나 1960년대 全體로 4번 실시에 53명의 합격자로서 微微한 실적이며, 1980년대에도 後半期에는 연 3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60년대 後期에 外務高試를 復活시켜서 至今까지 實施하고 있고, 財經職도 復活했으나 財經職은 1970년대에 와서 다시 一般行政에 包含되었다. 그래서 行政高試는 1960년대 後半 以後 行政高試, 外務高試, 技術高試로 크게 3대분 되어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82년도에 와서 行政高試는 一般行政, 財政經濟, 教育, 社會로 4分野로 나누어지고 技術高試는 機械, 電氣, 土木 등 10여개의 分野로 나누어져 實施되고 있다. 그런데 行政高試는 1988년에 法律職이 新設되어 현재 5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3. 職列 또는 職類新設의 必要性 檢討

行政考試는 현재 5個 分野로 나뉘어 運營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細分할 必要性이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急速한 經濟成長과 國民所得水準의 향상 등으로 行政需要가 急速하게 팽창하고 있는 分野가 많고, 全體의으로 社會的 分化의 高度化로 高度의 專門知識을 要求하는 分野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優秀人力을 둘러싼 民間部門과의 競爭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行政環境의 變化를 감안해 볼때, 다양한 行政需要의 充足을 위한 職列이나 職類를 新設할 必要性이 크다.

1982년 이후 1988년까지의 分野 및 專攻別 合格者 統計 資料를 바탕으로 高試實施의 個

<표 5> 분야별·전공별 합격자

기 간		재 경 직	교 육 직	사 회 직
1982~1988	총 계	175	74	80
	전 공 분 야	134	15	32
1982~1985	총 계	75	39	40
	전 공 분 야	61	7	16
1986~1988	총 계	100	35	40
	전 공 분 야	73	8	16

* 전공분야
재경직.....경제, 무역(국제경제), 농경제
교육직.....교육학
사회직.....사회학, 사회복지학

別化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의 專門知識 보유자를 확보하게 되었는가를 <표 5>를 통해 살펴보자.

<표 5>를 통해서 의견상 파악하기로는 專攻分野學科學生의 合格比率이 教育職의 境遇에 는 全體 합격자의 20%, 社會職의 境遇는 40%로서 分離實施에 따른 效果가 아주 크지 않으나 財政經濟職의 境遇는 77%로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經濟, 貿易, 經營學科 出身들은 財經職이 없었던 過去에도 합격자가 많았던 것을 考慮해 볼때는 分離實施의 效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分離實施 이전에는 教育 및 社會學科 出身의 考試合格比率이 엄청나게 낮았다.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의 統計值를 보면, 教育·사회학과 출신의 고시합격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즉, 1982년 이후 考試의 分離實施로 인해 教育 및 社會學 專攻의 考試志望者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學科는 經濟 및 經營學科인데 分離實施 이후 經濟學科 出身의 合格者 比率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經營學科 出身의 比率은 대폭 감소해 버렸다(과거의 12.6%에서 6.0%로). 추정컨대, 分離實施로 인해 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영역이 財經職으로 좁아져 버렸고, 結果적으로 考試의 總合格者 比率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1980년대 이후 私企業體나 研究機關의 勤務條件이 좋아져 이들 分野로 우수인력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結果를 놓고 볼 때 考試의 科目을 무엇으로 하고 職列을 어떻게 나누고, 해당인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學科 出身의 合格者 比率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1982년 이후 高試의 分離實施로 인하여 教育 및 社會職分野의 우수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教育職의 경우 해당전공 출신자가 20%이고 또 전체 합격자 中에서도 2.5%를 차지하였고 社會職의 경우는 40%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또 전체 합격자 中에서는 4.9%에 달하게 되어 分離 以前에 비하면 엄청난 비율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試의 모집 직렬이나 직류를 보다 세분할수록 專門分野別 優秀人力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專門分野의 優秀卒業生을 유치하는 側面에서 보면 技術高試 쪽이 더 時急한 側面이 있다. 充員對象 職位가 充分할 程度로 많지 않아서 分野別 募集人員도 적고(예를 들면 技術高試에서는 5명 정도를 뽑으면서 그것도 한해씩 건너 뛰는 수가 많음), 또 上級職位가 적기 때문에 昇進機會가 없고 人事不滿이 加重되는 境遇가 많다는 점 때문에 우수한 專門人力을 유인하지 못하고 民間企業과 研究機關에 빼앗겨 버렸다. 科學技術分野의 優秀人力을 政府部門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과목을 대폭 조정하여 불필요한 國策科目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昇進이나 人事體系도 融通性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職類나 職列에 속하는 5급 이상의 職位數를 감안하여 高試의 分離實施를 考慮하되 行政高試의 境遇는 試驗科目의 調整으로 어느 정도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

이다.

4. 職類 또는 職列新設 必要가 있는 分野

所得水準의 向上과 한국사회의 國際化와 더불어 行政組織에서도 다양한 分野의 專門家들이 요구되게 되었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行政需要의 充足을 위해서는 이런 分野들에 대한 職類나 職列의 新設을 一次的인 檢討對象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專門化가 더욱 요청되는 專門分野로서 5個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環境, 公害, 交通, 住宅, 都市問題 등이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行政需要도 크게 增加될 것이므로 이들 문제를 專門的으로 담당할 專門分野의 新設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國際競爭力의 向上으로 經濟의 持續的 發展을 뒷받침하기 爲해서는 研究 및 技術開發이 必要하고 이의 지원을 爲한 科學技術分野의 政府役割을 담당할 專門人力을 뽑을 필요성이 있다. 세제, 情報化社會의 進展과 위에서 본 技術開發의 必要性이 結合되어 반도체 등의 尖端産業分野가 重要해지고 이에 따른 行政的 지원이 要求됨에 따라 情報産業政策을 담당할 專門分野가 新設되어야 하고 네제, 民主化의 進展에 따라 民主行政의 必要性和 社會分化和 産業化 및 都市化에 따라 增加되는 法的 紛爭의 解決, 誘導를 爲한 法治行政의 必要性이 增加됨에 따라 法治行政을 담당할 專門職의 新設이 필요하다(이는 이미 1988년에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國際化의 進展으로 國際問題의 處理가 重要해짐에 따라 通商問題를 專門的으로 담당할 分野도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以上과 같은 需要와 새로운 分野 新設必要性에 對應하여 現在의 職位分類體系가 再調整되어야 하며, 高試科目의 調整도 이러한 要素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IV. 高試科目

1. 行政高試 科目의 變遷

1970~1981년까지를 보면 1차 시험에는 총 4회에 걸쳐 1회당 4科目中 그 평균(괄호안은 4회 실시의 총 과목수)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法學系統.....1.75(7)
- 經濟學系統.....0.50(2)
- 教養.....1.75(7)

2차 試驗의 必須科目에는 1회당 평균 4.5科目 중

- 法學系統.....1.75(7)
- 經濟學系統.....1.50(6)
- 行政學.....1.00(4)
- 國民倫理.....0.25(1)

2차 試驗의 選擇科目에는 1회당 平均 9개 科目中에서 法學系統이 3.25(13)科目이다.

한편, 1982~1989년까지의 4개 分野別로 시험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1차 試驗에서 4개 科目은 모든 分野에 共通이고 1개의 科目이 分野別 專攻에 該當된다. 그리고 2차 必須科目도 4개 科目은 共通이고 한개만이 分野別 差異가

〈표 6〉 행정고시과목(1982~1989)

1 차 시 험		2 차 시 험	
		필 수	선 택
일반행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국민윤리	민법(신분법제외), 조사방법론, 심리학중 1과목; 정책학, 지방행정(도시행정포함), 국제법중 1과목
재 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국민윤리	통계학, 회계학, 경영학중 1과목 경제정책, 상법, 화폐금융론중 1과목
교 육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국민윤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사회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과정중 1과목
사 회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사회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국민윤리	사회심리학, 사회조사론, 사회문제 중 1과목, 노동법, 사회정책(사회복지 정책 포함), 사회복지론중 1과목

〈표 7〉 행정고시과목(1990~)

1 차 시 험		2 차 시 험	
		필 수	선 택
일반행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국민윤리	민법(신분법제외), 조사방법론, 사회학중 1과목; 정책학, 지방행정(도시행정포함), 국제법중 1과목
법무행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민법(신분법제외), 국민윤리	상법, 노동법, 국제법중 1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중 1과목
재 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국민윤리	통계학, 회계학, 경영학중, 1과목; 국제경제학, 상법, 화폐금융론중 1과목
교 육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국민윤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조사방법론중 1과목;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교육행정학, 교육과정중 1과목
사 회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국민윤리	사회심리학, 조사방법론, 사회문제론 중 1과목; 노동법, 사회정책(사회복지 정책포함), 사회복지론중 1과목

이다. 選擇科目은 分野別 專攻을 감안하고 있다.

1990년 以後에 實施 豫定으로 총무처가 결정하고 있는 案(〈표 7〉)도 現在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차 必須科目으로 情報體系論이 分野別 專攻科目 대신에 包含되어 있다.

2. 科目決定의 考慮要因

職列, 職類의 決定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行政需要를 판단해야 된다. 이때 行政需要中에서 分野가 새로이 늘어나는 것은 職類, 職列의 新設로서 對處하게 되고 모든 分野에 共同的으로 나타나는 問題에 對해서는 試驗科目의 調整으로서 대처해야 한다. 前者에 該當하는 예로서는 研究, 技術分野나 環境, 交通分野 등이 있고 後者에 該當되는 것은 國際化, 民主化, 福祉化, 情報化 등이 있다.

高試科目의 設定은 그 學問分野의 發展程度도 또한 감안하여 우수한 人材를 確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現存하는 學問의 狀態와 가까운 將來의 發展可能性도 감안해야 한다.

3. 再檢討되어야 할 科目

以上の 原則과 대비했을 때 行政需要의 變化에 따라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서 주로 論難이 많이 되는 科目中 1, 2차 필수과목만 보면 다음과 같다.

(1) 國民倫理

國民倫理는 크게 倫理哲學分野와 이데올로기分野로 대별될 수 있다. 倫理哲學分野는 東·西洋의 思想이 주가 되는데 과연 이 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공직윤리나 부정·부패 등의 양식이나 윤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또 國民倫理에서 다루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 역시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경직적이어서 복잡하게 움직이는 南北關係를 신축성있게 대응·해결해 나갈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므로 차라리 政治思想이나 政治學 分野를 더 강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른 國民倫理科目의 존폐에 대한 찬반론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倫理意識과 理念的 무장을 爲해서 繼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反面에 過去의 政治의 特性에 의하여 設置되었고, 政治學에서 어느 程度 包含시킬 수 있으며, 公職 倫理는 다른 方法의 教育을 통해서 確立시켜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2) 國 史

國史에 대해서도 高試科目으로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국민학교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大學教養科目으로까지 배웠는데 또 시험을 볼 필요가 있는가란 의문부터, 시험이 지나치게 단편지엽적인 지식을 묻고 있고 시험 출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國史를 배우고 익히는 근본적인 취지가 民族的 긍지와 自負心과 愛國心을 고양하고 過去를 통해 現在를 正確히 이해하고, 過去의 民族 수난사를 통감하고, 미래에는 보다 잘해 보자는 교훈을 얻는 데 있다면, 현재

의 객관식 시험제도는 상당히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1960年代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88올림픽 등으로 젊은계층에게는 民族的 자부심의 부족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또, 國際化的 時代에 民族史的 知識보다 世界史的 知識이 더욱 切實히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다.

(3) 情報體系論

1990년부터 시행되는 行政高試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情報體系論은 一次 시험과목 中 分野制 전공과목 대신에 치게될 科目이다. 즉 一般行政의 行政學概論, 財經職의 經濟原論, 教育職의 教育學概論, 社會職의 社會學概論 대신에 情報體系論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情報化的 急速한 進展과 行政電算化的 需要에 대비해서 共通的으로 必要하다는 主張과, 이와 反對로 아직도 未熟한 學問的 地位와 하나의 科目으로서의 比重이 작다는 점과 高級 公務員이 굳이 알아야 할 정질의 것이라면 行政學 속에 情報體系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點을 들어 情報體系論이란 獨立된 科目으로 넣는 것을 반대하는 主張도 있다. 反對論者들은 정보체계론을 당분간 모든 분야의 선택(2次)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4. 追加되어야 할 內容

주로 많이 論議되는 內容들만 4가지 정도로 檢討해 보도록 한다. 먼저 行政法속에 經濟法을 強化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成熟된 經濟에서 發生하는 諸問題의 解決을 爲해서 행정법속에 經濟法에 관한 문제를 20~3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로 政治學 속에 國際政治, 政治思想 分野를 더욱 強化하여 國際化에 대비하고 國民倫理科目的 廢止에 대비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특히 政治思想分野를 강화하고 이에 관한 문제를 몇 % 이상 출제하도록 하면 國民倫理의 一部分을 克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國民倫理代身에 政治學이 들어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經濟學 속에 國際經濟를 強化하고 非經濟分野의 境遇에는 재정학 등의 投資分析論理 등을 導入, 包含시켜 國際化와 複雜한 問題解決에 對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입의 총합이 GNP의 70~80%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國際經濟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經濟的 안목과 이에 입각한 政策決定과 政策執行이 요구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脈絡에서 情報處理와 問題分析能力의 向上을 위해서 政策分析的 論理와 外國制度的 理解와 導入을 爲해서 比較政策, 比較行政 部分이 行政學 속에 強化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복잡한 社會問題의 對應을 위해서는 ① 分析的 論理와 ② 比較政策的 論理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절한 知識을 제공하는 것이 政策學 및 比較政策學이다.

5. 專攻分野의 強調와 一般行政學의 育成

크게 問題가 되는 한두 과목을 除外하면 몇 科目이 追加될 수도 있다. 全般的으로 보아

分野別로 몇 개의 科目을 追加시켜도 된다. 이때 基本方向으로서 分野別 專攻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 分野別 專門知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技術高試와는 달리 모든 社會問題는 서로 複雜하게 聯關되어 있고 여러가지 側面을 나타나게 되며, 타분야에 대한 理解의 부족이 部省割據主義를 招來할 수도 있고, 教育訓練過程에서 어느 程度 專門知識을 習得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高位職에 昇進되면 폭넓은 眼目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行政高試에서 共通的으로 추가될 科目들은 國際化, 情報化, 民主化, 福祉化의 要求와 아울러 問題解決을 爲한 高度의 分析의 能力을 養成할 수 있는 科目이어야 한다.

行政에서 다루게 되는 각종 社會問題들은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전체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안목이나 기본적 지식은 고시를 칠 때 구비하지 않으면, 현직에 배치되어 7~8년 지나면 다른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되어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행정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험과목을 추가시키는 대신에 교육·훈련과정에서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필수과목에 관한 것으로 Ideology교육 같은 것도 고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분야별 전공과목 중에서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